

별지 제8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의2제1항 후단 중 “등본을 확인”을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로, “해당서류”를 “해당 서류”로, “사본”을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신고서를”을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로, “해당서류”를 “해당 서류”로, “사본”을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의 “제3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을 “제3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²]”을 각각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38호의7서식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을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을 각각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직원 확인 사항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6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²]”을 각각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하고, 뒷면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인 제출서류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紙質)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9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6호('17.11.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2호('17.12.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중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소양호 횡단구간(장경간) 전력선종 변경

나. 화천수력발전소 구내 신설 건물과의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철구 위치 변경

다.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